



ASIAN DOMAIN NAME DISPUTE RESOLUTION CENTRE

— A charitable institution limited by guarantee registered in Hong Kong

(서울사무소)

결 정 문

사건번호: KR-1300083
신청인: 엄범희 (UM BEOM HEE)
피신청인 : 이상준 (LEE SANG JUN)

1. 당사자 및 분쟁 도메인이름

신청인 : 엄범희 (UM BEOM HEE)
전북 전주시 덕진구 기린대로 954-6(255호)
피신청인: 이상준 (LEE SANG JUN)
서울시 마포구 망원1동 1291

분쟁 도메인이름은 "todayan.com"이며, 피신청인에 의해
주식회사 메가존(서울 관악구 신사동 527-13 삼남빌딩 3층)에 등록되
어 있다.

2. 절차의 경과

신청인은 2013. 3. 21. 아시아도메인이름분쟁조정센터(ADNDRC) 서울 사무소(이하 ‘센터’ 라고 함)인 인터넷주소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 도메인이름의 이전을 구하는 신청서를 제출하였다.

2013. 3. 22. 센터는 등록기관에게 등록인의 정보를 요청하는 이메일을 발송하였고 등록기관은 2013. 3. 22. 센터에 등록인의 확인 등 세부사항을 확인해주었다.

2013. 3. 22. 센터는 분쟁해결신청서가 통일도메인이름분쟁해결규정(이하 ‘규정’ 이라 함), 통일도메인이름분쟁해결 규정을 위한 절차규칙(이하 ‘절차규칙’ 이라 함), 통일도메인이름 분쟁해결규정을 위한 아시아 도메인이름 분쟁해결센터 보충규칙(이하 ‘보충규칙’ 이라 함)에 따른 형식적 요건의 충족 여부를 점검하였다.

2013. 3. 25. 센터는 분쟁해결신청서를 전자우편으로 피신청인에게 발송하였고, 피신청인에게 답변서를 제출할 수 있는 마감기일이 2013. 4. 14. 임을 전자우편으로 통지하였다.

2013. 4. 14. 피신청인은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았고, 센터는 2013. 4. 15. 피신청인이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전자우편으로 통지하였다.

2013. 4. 16. 센터는 이덕재 조정위원에게 선임을 요청하였고, 2013. 4. 16. 조정인으로서의 승낙 및 중립성과 독립성의 선언을 확인 받아 조정부를 구성하였다.

3. 사실관계

4. 당사자들의 주장

A. 신청인

신청인의 주장을 요약하면 아래와 같다.

신청인은 분쟁도메인이름을 인터넷 주소로 하는 인터넷신문 ‘투데이안(todaian)’을 2009년 5월부터 2011년 5월까지 2년 동안 운영하였다.

신청인은 2012년 12월에 다시 인터넷신문 사업을 시작하면서 인터넷신문의 명칭을 과거에 사용하였던 위 명칭과 동일하게 사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신청인이 이미 분쟁도메인이름을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영문명칭은 ‘todayan’으로, 도메인이름은 www.todayan.com을 사용하고 있다.

그런데 1) 인터넷주소창에 분쟁도메인이름을 직접 입력하면 곧바로 다른 인터넷주소의 성인사이트로 연결되고 있어 이와 유사한 도메인이름과 인터넷신문명칭을 사용하고 있는 신청인이 피해를 보고 있으며, 2) 분쟁도메인이름을 인터넷검색창에 입력하면 신청인이 과거에 2년 동안 운영하면서 인터넷에 올려두었던 기사나 동영상을 제3자가 블로그에 다시 올린 것들이 검색되는데 그 검색된 기사나 동영상과 함께 분쟁도메인이름이 보이도록 하고 분쟁도메인이름을 클릭하면 성인사이트로 연결되도록 하여 신청인에게 치명적인 손상을 입히고 있다.

B. 피신청인

이에 대하여 피신청인은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았다.

5. 검토 및 판단

가. 적용규범

이 사건 분쟁에서 적용해야 하는 규범인 통일도메인이름분쟁해결규정은 도메인이름의 ‘남용적 등록(abusive registration)’ 즉, 도메인 이름의 ‘무단점유(cybersquatting)’에 대해서만 적용가능하며, 등록인의 다른 불법행위는 그 규제대상으로 하지 아니한다. 그리고 위 규정 제4조 (a)항에 따르면 신청인은 자신의 주장을 관철시키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3가지 요건을 모두 입증해야 한다.

(i) 신청인이 권리를 갖고 있는 상표 또는 서비스표와 등록인의 도메인이름이 동일하거나 혼동을 일으킬 정도로 유사하다는 것,

(ii) 등록인이 그 도메인이름의 등록에 대한 권리 또는 정당한 이익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다는 것, 그리고

(iii) 등록인의 도메인이름이 부정한 목적으로 등록 및 사용되고 있다는 것.

나. 인정사실

이 사건에서 신청인이 제출한 자료 및 조정인이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직권으로 조사한 바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신청인은 분쟁도메인이름을 인터넷 주소로 하는 인터넷신문 ‘투데이안(todaian)’을 2009년 5월부터 2011년 5월까지 2년 동안 운영하면서 분쟁도메인이름을 위 인터넷신문의 인터넷 주소로 사용하였다.

2) 신청인이 위 인터넷신문 사업을 중단하면서 도메인이름에 대해서 연장등록을 하지 아니하여 위 도메인이름의 등록이 말소되었다.

3) 그 후 피신청인이 이 사건 분쟁도메인이름을 등록하였다.

4) 신청인이 2012. 12.경에 다시 인터넷신문 사업을 시작하면서 과거에 자신이 사용하였던 인터넷신문의 명칭 ‘투데이안’을 그대로 사용하지만 피신청인이 분쟁도메인이름을 이미 선점하여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부득이 그 영문명칭을 ‘todayan’으로, 도메인이름을 www.todayan.com으로 변형하여 사용하고 있다.

5) 인터넷주소창에 분쟁도메인이름을 입력하면 곧바로 다른 인터넷

주소의 성인사이트로 연결되고 있기 때문에 이와 유사한 도메인이름 및 인터넷신문명칭을 사용하고 있는 신청인이 구독자들의 혼동으로 인한 피해를 입고 있다.

6) 인터넷검색창에 분쟁도메인이름을 입력하면 신청인이 과거에 2년 동안 운영하면서 인터넷에 올려두었던 기사나 동영상을 제3자들이 자신의 블로그에 다시 올린 것들이 검색되는데, 그 검색된 기사나 동영상과 함께 분쟁도메인이름이 보이도록 하여 분쟁도메인이름을 클릭하면 다른 인터넷주소의 성인사이트로 연결되도록 하여 신청인이 피해를 입고 있다.

다. 판단

규정 제4조 (a)항에 따라 신청인은 먼저 신청인이 권리를 가지고 있는 상표 또는 서비스표와 등록인의 도메인이름이 동일하거나 혼동을 일으킬 정도로 유사하다는 것을 입증해야 한다. 그런데 신청인은 이 사건에서 분쟁도메인이름과 동일 또는 혼동을 일으킬 정도로 유사하다고 볼 수 있는 자신의 상표권이나 서비스표권에 대하여 입증하지 않고 있으며, 달리 신청인이 그러한 상표권이나 서비스표권을 가지고 있다고 보여지를 찾을 수 없다. 신청인이 2009년 5월부터 2011년 5월까지 2년 동안 인터넷신문 ‘투데이안(todaian)’을 운영한 사실은 인정되나 그러한 사정과 이 사건에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피신청인의 분쟁도메인이름 등록 무렵에 ‘투데이안’과 ‘todaian’ 표장에 대하여 신청인에게 상표권이나 서비스표권 또는 이에 준하는 권리가 있다고 볼만 한 권원을 인정하기는 어렵다.

한편, 피신청인이 분쟁도메인이름을 등록한 후 신청인이 과거에 작성하여 올려두었던 인터넷상의 동영상과 기사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신청인의 명예를 심각하게 해치고 있으며, 신청인이 다시 인터넷신문업을 하면서 과거에 사용하였던 것과 동일한 이름을 사용하는데 분쟁도메인이름으로 인하여 부득이 그 영문명칭과 도메인이름을 ‘todayan’과 ‘www.todayan.com’으로 변형하여 사용하고 있으며, 분쟁도메인이름이

음란사이트로 포위당 되고 있어 두 웹사이트간의 혼동으로 인하여 신청인이 피해를 입고 있음을 충분히 짐작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행위의 위법성 여부에 대한 판단과 제재조치는 본 조정의 근거규범인 통일도메인이름분쟁해결규정에서 규제하고 있는 도메인이름의 ‘남용적 등록(abusive registration)’ 으로 보기 어려워 본 조정에서는 검토하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본 조정에서 신청인은 규정 제4조 (a)항의 세가지 요건을 모두 입증하여야 하는데 (i)의 요건을 입증하지 못하였으므로 나머지 (ii)와 (iii)의 요건을 입증하였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판단을 생략하고 청구를 기각하기로 결정한다.

6. 결정

위에서 본 바에 따라, 본 조정부는 ‘규정’ 제4조 (i)항 및 ‘절차규칙’ 제15조에 의하여, 신청인의 피신청인에 대한 분쟁도메인이름 <todayian.com>의 말소청구를 기각할 것을 결정한다.

이덕재
1인 조정인

결정일: 2013년 4월 29일